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황이주 의원외 12명)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1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황이주·김희수·박문하
김지식·김위한·김수문
고우현·황재철·윤종도
이수경·최태림·이동호
나기보의원(13명)

찬 성 자 : - 명

1. 제정이유

-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매년 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교양 교육 및 여가활동,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수환경조성사업, 건강관리, 공동체문화형성 사업 등 건강장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건강장수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 정 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
- 규제심사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2. 건강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사항

3.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사항
4.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사항
5.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건강장수활동) 건강장수활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등 장수 환경 조성 사업
2.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3. 시니어 교양교육 및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사업
4. 한자, 한글 등 학습동아리 운영 및 여가활동
5.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
6. 소득·경제활동 등 소일거리 발굴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사업
8.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9. 도시민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강장수활동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하려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마을주민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퍼센

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2. 젊은 세대와 함께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이 가능한 마을
 3. 노인의 농어업·공예품 제조,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 등 생산 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마을
 4.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운동·학습 등 공동 사회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마을
 5. 건강장수활동 지원 완료 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한 마을
 6.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 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가 제5조의 건강장수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과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

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3.6.12.]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

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
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 안 주 무 부 서	농업기술원	통 보 (조 치) 일	2017. 8.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경북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	“농어촌”,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적정함
	도지사는 매년 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적정함
	장수환경조성사업, 건강관리, 공동체문화형성 사업 등 건강장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적정함
	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적정함
	건강장수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적정함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적정함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3조(사업계획수립), 제4조(건강장수활동), 제5조(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제6조(예산지원), 제7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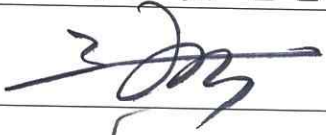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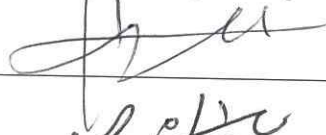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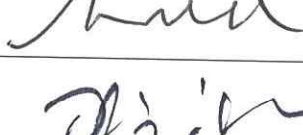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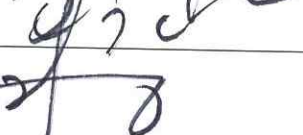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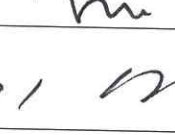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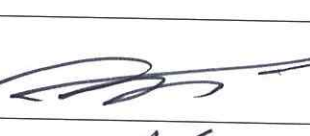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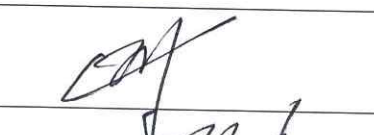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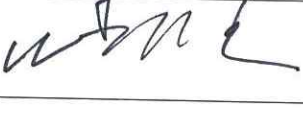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장수환경 조성 사업, 건강관리, 공동체문화형성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범위의 특징이 어렵고, 지원대상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경북농업기술원 지방농업주사보 황인엽 (053-320-0285)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황 의 주		
김 화 수		
최 장 하		
김 석		
김 위 훈		
김 숙 문		
고 우 현		
황 재 철		
김 종 도		
이 수 경		
최 재 린		
이 종 훈		
나 기 보	